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향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4.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 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증가

이에 따라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 등 투기발생 요인 차단과 보상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 및 근거 마련(안 제7조)

감정평가 기초자료인 조서(토지, 물건)의 주관적 판단 최소화를 위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기준 마련 근거 신설

나. 타법(감정평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8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다.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안 제41조 제3호)

이주대책대상자 중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라. 업무 종사자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 제외(안 제41조 제4호)

이주대책대상자 중 업무관련 종사자의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용지도(用地圖)”를 “용지도(用地圖) 및 기본조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지도”를 “용지도 및 기본조사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 제목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1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주대책대상자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확정되거나, 공고 또는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u>용지도(用地圖)</u>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 ----- ----- ----- ----- <u>용지도(用地圖)</u> <u>및 기본조사서</u>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u>용지도</u> 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 <u>용지도 및 기본조사서</u> 를 ----- ----- ----- -----.
③~⑥ (생략) <u><신 설></u>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u>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28조(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u>감정평가업자</u>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제28조(----- - <u>감정평가법인등</u> ---) ① -- ----- -----

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
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략)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천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것

3. (생략)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법인등
을 ----- “감정평가법
인등”이라 ---)을 -----

② _____

_____ 감정평

가법인등을 _____.

③ _____

감정평가법인등을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

-- 감정평가법인등을 -----

3. (현행과 같음)

4. _____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값
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도지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값평가업자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 감
정평가법인등을 -----

④ 감정평가법인
등을
감정평가법인
등을

⑤ ----- 감정평가법인

등을 -----

----- 감정평가법인등을 -----

⑥ _____

_____ 감

정평가법인등 _____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u>감정평가업자</u>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 ----- ----- <u>감정평가법</u> <u>인등</u> ----- ----- ----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생략)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이주대책대상자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u>
<u><신 설></u>	4. <u>이주대책대상자가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01